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2009-04-06 조례 제 38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4조(공공디자인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디자인업무 지원)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장(이하“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도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시각이미지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등에 대한 디자인업무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디자인업무를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디자인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관련 사업

제8조(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제7조에 따른 디자인협의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시.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제9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사업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제10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도의회 의원과 도시계획·조경·건축·공공디자인·공공예술·시각디자인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시기 및 방법, 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심사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고,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자문 · 심의대상 시설물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공공청사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나. 공공교육, 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 나. 체육관 다. 공연장 라. 의료·복지시설 마. 복지회관 바. 광장 · 공원 · 놀이터 등
전시·홍보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전시관 마. 기념관 등
휴양시설	가. 수목원 나. 휴양림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2. 도시기반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로,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방음벽 다.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 낙석방지망 등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부속시설	가. 가로등 나. 도로안내사인 다. 흰스 라. 볼라드 마. 가드레일 바. 경계석 사. 보도블럭 아. 자전거도로 자. 자전거보관대 등
관광안내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사인 라. 상징조형물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보호덮개 나. 가로수지주대 다. 가로화분대 등
휴게시설	가. 벤치 나. 의자 다. 파고라 등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대기오염 전광판 등
친수공간시설	가. 하천 나. 공원 및 도시내 수경공간 다 분수대
교통관련시설	가.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공항버스 승차대 및 안내표지판 나. 보행자 안내표지 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라. 주차장 관리소(박스형)